

#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문성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6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  
발 의 자: 문성호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김동욱, 김혜영, 남창진,  
박상혁, 박영한, 박환희,  
서상열, 이민석, 장태용,  
채수지, 허 · 훈 의원(11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市 직영으로 ‘서울로 7017’ 운영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탁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- ‘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’의 기능이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무위탁 근거 조항 삭제(안 제3조)
- 나. ‘서울로 7017 위원회’ 관련 조항 삭제 (안 제16조 ~ 제20조, 부칙 제2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##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삭제하고, 제6조부터 제15조를 제5조부터 제14조로 한다.

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삭제하고, 제21조부터 제23조를 제15조부터 제17조로 한다.

조례 제6548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제5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서울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,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&lt;개정 2019.5.16&gt;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u></p> <p><u>제16조(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설치) 시장은 서울로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서울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방향 정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2. 서울로에 설치된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3. 서울로 주요 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4. 서울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민관 협력에 관한</u></li> </ol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사항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

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2. 안전, 경영, 문화, 디자인, 도

<삭 제>

시계획, 조경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,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서울역 일대에 주소,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민 및 상공인 등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서울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.

제18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  
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 
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 
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 
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 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
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원하는 경우
2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9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

<삭 제>

<삭 제>

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20조(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-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<부 칙>

제2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다만,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